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체크리스트

< Check List 1 >

- ☐ 계약상대방이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이 아님으로 종료

체크 항목	체크
① 소속 고위공직자	☐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③ 해당 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④ 해당 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그 기관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⑤ 해당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⑦ 공직자(①~⑥)의 배우자	☐
⑧ 공직자(①~⑥)의 직계존속·비속	☐
⑨ 생계를 같이하는 공직자 배우자(⑦)의 직계존속·비속	☐
⑩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공직자(①~⑥)이거나 가족의 범위(⑦~⑨)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
⑪ 공직자(①~⑥), 배우자(⑦) 또는 직계존속·비속(⑧,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
-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 Check List 2, 3 >

- ☐ 다만, 계약상대방이 공직자의 가족 등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아래 열거된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아래 항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체크 항목	체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체크 항목	체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면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